

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. 2. 21 선고 2017가단5769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8. 1. 31

판결 선고 2018. 2. 21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영암군 C 전 1,307㎡ 및 위 D 대 617㎡에 관하여 각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1990. 2. 26. 접수 제3779호로 각각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주문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시효 소멸하였으므로, 주문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 (자백간주 판결)

판사 류봉근